

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최성진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정오표(초판기준)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p.2 예제2 정답 수정	2. 국토교통부장관(×) → 대통령령(○)	2. (○)
p.2 예제3 정답 수정	3. (○)	3. 국토교통부장관(×) → 대통령령(○)
p.29 제안사 유 5. 수정	5. 도시·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·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사항(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2/3 이상 동의) [2/3 이상x]	5. 도시·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·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사항(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4/5 이상 동의) [2/3 이상x]
p.29 제안사 유 추가	공법상 제안시 동의는 모두 2/3 이상 동의 단, 기반시설 설치·정비·개량만 4/5 이상 동의)	공법상 제안시 동의는 모두 2/3 이상 동의 단, 기반시설 설치·정비·개량, 도시·군 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만 4/5 이상 동의)
p.31 내용[대 상] 괄호 추가	1.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(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2/3 이상 동의) 2.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(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2/3 이상 동의) 3. 도시·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(1. 또는 2.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(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4/5 이상 동의)	
p.72 두 번 째 박스 ① 1. 교체	①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 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. 다만,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.	① 주거환경개선사업, 재개발사업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①-1 재건축사업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 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